

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3년 04월 06일

3. 변경사유

- ① 재무정보 확정에 따른 변경
-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4. 변경사항(투자설명서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	-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 자신탁의 투자대상]	<추 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권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. 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· 증권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<추 가>	증권대차 거래 위험
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[세액공제]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괄호 추가)</p> <p>단,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로 함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(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	<p>[세액공제]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공제한도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	<p>[분리과세한도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[분리과세한도]</p> <p>- 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p>
	<p>[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[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]</p> <p>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</p>

		<p>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	<p>① 세액공제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___ 공제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괄호 추가)</p> <p>다만, 2020년 1월 1일 납입한 금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</p>	<p>① 세액공제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___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	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	
	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	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하며, 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-	(업데이트)
	<기업공시서식 반영>	·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· 주식의 매매회전율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	-	(업데이트)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-	(업데이트)

끝.